「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: 환경과장)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침이 사후관리 개념에서 사전 발생억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어「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별도로 제정하고,
- 「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폐기물관리법」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를 비롯해 수수료 징수, 장려금 지급, 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
 -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, 신고 포상금 지급, 위탁운영 등 종류별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